

는 동등한 세금이 과세되어야 한다는 점<sup>6)</sup>과 2000.12.31 취득자와 2001.1.1 취득자간에 너무나 큰 세부담 불형평 발생으로 인한 2001.1.1이후 취득자의 새로운 조세불만을 해소하고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되더라도 바로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2000.12.31.이전 취득자의 취득권도 어느 정도 보장해 주면서 2001.1.1.이후 취득자도 차종변경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으로 유예기간 제도를 설정한 취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다.

<1999.12.28. 법률 제6060호 부칙제5조>

第5條(7人乘이상 10人乘 이하 乘用自動車에 대한 課稅特例)自動車管理法에 의하여 自動車의 區分基準이 2001年 1월 1일부터 乘用自動車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自動車管理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乘用自動車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登錄稅 및 自動車稅는 第132條의2 및 第196條의5 第1項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乘合自動車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乘合自動車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1年 1月 1日부터 2004年 12月 31日까지는 自動車管理法에 의한 自動車의 區分基準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年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는 乘合自動車의 稅率을 적용한 稅額에 乘用自動車의 稅率을 적용한 稅額과 乘合自動車의 稅率을 적용한稅額의 差額의 100分の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計算한 금액
3. 2006年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는 乘合自動車의 稅率을 적용한 稅額에 乘用自動車의 稅率을 적용한 稅額과 乘合自動車의 稅率을 적용한稅額의 差額의 100分の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計算한 금액

6) 재산세·종합토지세 등 보유과세의 경우 매년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그 납세의무 성립당시의 법령과 현황에 따라 과세된다.

예) 과세기준일 현행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사실상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으면 대지로 과세